

# 조례안 검토보고서

- ①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②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목

<의안번호 제2006-7호>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3월 8일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3월 9일

## II. 제안이유

- 재난분야에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05. 8. 4 전면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 수방단을 폐지하고,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

## III. 주요내용

### 가.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 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단체·기업체·기관 등으로 구성
-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

### 나. 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
-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
-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

### 다.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협의회는 단장, 민간단체 대표, 읍·면 대표 등으로 구성

라.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재난 사전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련 전반 지원활동

마.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IV.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국지성 호우 등 그 발생 및 규모의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태의 재난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 지역 내 지형과 수리(水理)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각 분야의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의 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형 방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와 관련,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 7. 27자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임.

나.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금지사항,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방재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연2회 8시간과, 연1회 4시간으로 의무화(안 제12조, 안 제13조)한 것은 방재단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기대됨.

## 다. 종합적으로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 법령으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규범화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련성에 있어 기능상 유사하고 중복성이 내재된 「거창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조례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3월 7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V.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6. 1. 24 ~ 2. 13(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 의견제출 : 별도의견 없음

[참 고 1]

## 《자연재해대책법》

###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 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 (예산지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3월 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3월 9일

## II. 제안이유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및 책임순위,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함

## IV. 검토의견

### 가. 본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형평성 있게 제정됨.

### 나. 조례내용은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무 명시화 및 책임 순위, 책임범위, 그리고 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의무 등 법령으로서의 체계성은 갖추고 있으며
-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함께 3월 3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 제설·제빙의 책임과 순위, 범위, 시기 등 각종 규제 및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수단이 없어 법 규범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
- 상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본 조례상에 일반적인 벌칙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홍보 등 대책장구가 요구됨.

## V.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6. 1. 17 ~ 2. 6(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 의견제출 : 별도의견 없음



## [참 고 2]

###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방재단은 ○○시(군·구)에 설치한다.

#### 제3조 (명칭)

명칭은 “○○시(군·구)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함)“이라 한다.

#### 제4조 (조직)

-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장이 위촉한다.
-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⑦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군·구)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군·구)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④ 대표는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시(군·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자치단체의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군·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 (임무)

-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군·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제9조 (소집)

-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운영 등)

-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군·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군·구)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매년 ○○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군·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군·구)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군·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⑨ ○○시(군·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군·구)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군·구)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군·구)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군·구)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0일 까지 ○○시(군·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 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정 주체에 따라 “주민”을 도민, 시민, 군민, 구민으로 할 수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제설·제빙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유형 또는 거주·점유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달리할 수 있음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첨부 예시도 참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설·제빙 작업시기 조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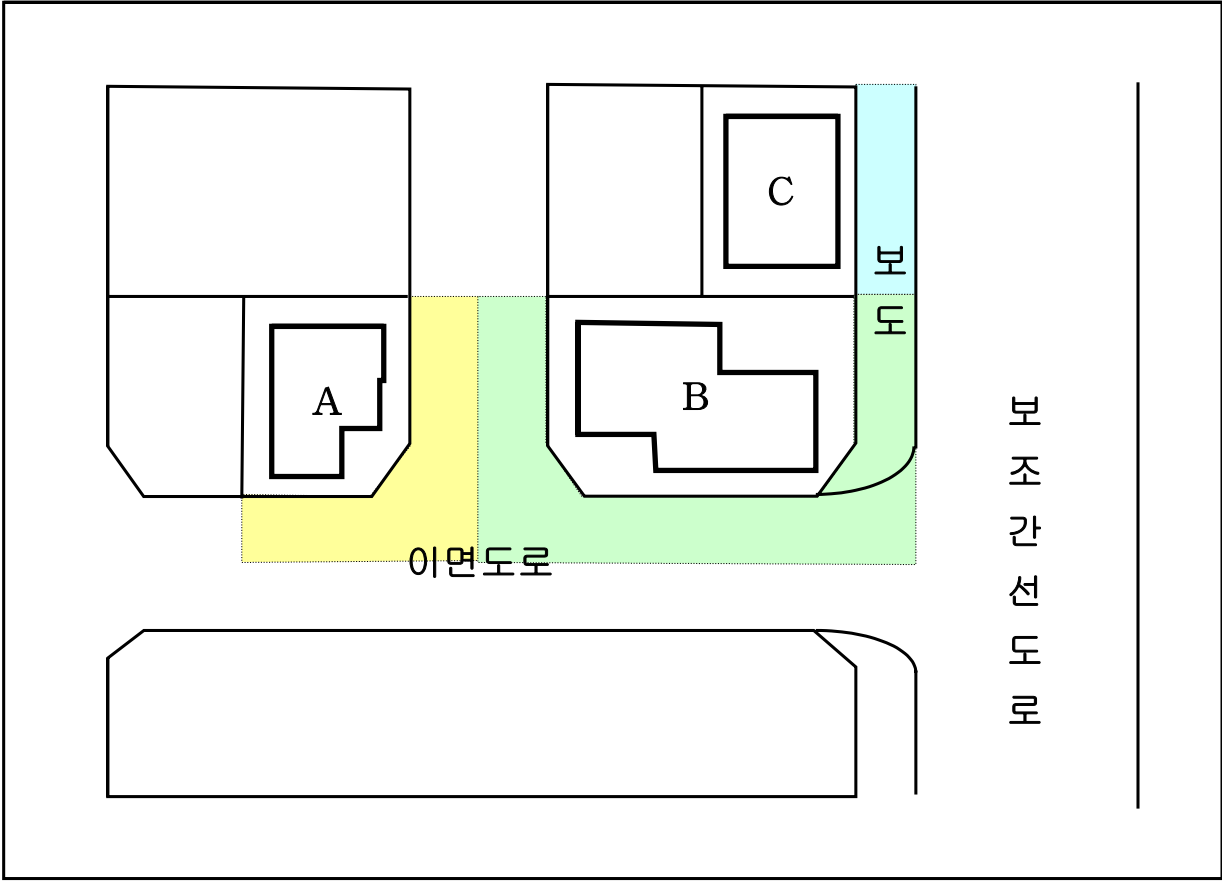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요청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검토(수요량, 도로여건 등을 감안 결정)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